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 일 자 : 2016. 04. 27.

○ 기 관 명 :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희)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3층

○ 답 당 : 장여경 (정책활동가)

○ 전 화 번 호 : 02-774-4551(진보넷)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입법은 금융산업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비식별화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를 국민에게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입법은 위헌적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현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중복” 되어 있는 제도 환경을 개선하여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국민들은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14 카드3사 1억 4백만 건 유출)와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15 고객정보 약 2천4백만 건을 개당 1,980원 혹은 2,800원씩 받고 보험회사들에 유상판매한 혐의로 홈플러스 경영진 형사 기소)을 겪으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입법안은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분으로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 국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 앞에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비전과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 이에 정보인권단체 진보넷은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Ⅱ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및 의견

1.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1호 : 반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2조(정의) ----- -----. 1. “신용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금융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한 거래(이하 “금융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그 정보만으로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2) 신용정보주체와 금융거래등 관계의 설정·유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금융거래등에 관한 정보

<u>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u>	<u>4) 2) 또는 3)과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u>나.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u> <u>1) 가목의 정보</u> <u>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아닌 자로부터 제공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u>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허용된 정보</u> <u><삭 제></u>
<u>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u>	<u><삭 제></u>
<u>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u>	<u><삭 제></u>
<u>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u>	<u><삭 제></u>

가. 주요내용

-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1호를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나. 시민단체 의견

- 금융위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금융위의 주장과 달리 명목상 신용정보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의 대상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결국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시키게 됩니다.
-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1호에 반대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 신용정보들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다양한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의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2호 : 반대

현행	개정안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그 정보만으로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가. 주요내용

-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2호를 통해 비식별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 시민단체 의견

-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중 비식별 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2호는 개인신용정보를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개인신용정보가 비식별화 되었다 해도 이는 응당 보호 받아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아무리 비식별화 하더라도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정보 증가, ▲데이터 공개의 증가, ▲맞춤형 광고 데이터의 증가와 데이터 집중의 심화,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의 가속화, ▲사물통신 환경과 비식별 정보의 폭증 등으로 인해 재식별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금융위 역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은자는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설된 제32조의2제7항을 동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만 보아도 쉽게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에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2호는 금융소비자들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되는 방향으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더군다나 금융위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기존 「신용정보법」에 따라 규정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판결입니다. 즉 신용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으로 보호 받아야 함은 명백합니다. 이 판결은 동 개정안에 비추어 보아 어떠한 맥락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2호에 반대합니다. 시민들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수집의 범위와 목적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훼손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7호 : 반대

현행	개정안
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요내용

-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7호를 통해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고자 합니다.

나. 시민단체 의견

- 오늘날 각종 산업부분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7호는 해당 법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 결국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가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호 받아야 할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 역시 함께 축소되게 됩니다.
-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7호에 반대합니다. 현재 산업의 환경과 현실을 고려하여 기계적인 분야의 구분할 것이 아니라, 보호되어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등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의해 중첩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15조 : 반대

현행	개정안
제15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제15조(신용정보 처리의 원칙) 신용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u>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4.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u> <u>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	--

가. 주요내용

-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15조를 통해 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시민단체 의견

-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동 법으로 보호를 받는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등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기계적인 산업 구분에 따른 제도의 분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마저 삭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15조에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인 목적별 수집, 최소수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일반법을 무시하고 동 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별 수집, 최소수집의 원칙은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5.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32조의2제2항제4호 : 반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신용정보 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생략)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 (생략)

가. 주요내용

-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32조의2제2항제4호를 통해 앞선 제2조제2호와 함께 비식별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 시민단체 의견

- 앞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제2호에 대해 반대했던 것과 동일한 사유로 인해 제32조의2제2항제4호 역시 반대합니다.(동 의견서 6-7쪽 참고)

Ⅲ 결론

- 금융위의 인식과는 달리,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규범들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등 처리하는 데 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포기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비식별화라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입법은 금융산업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오히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최근 새로 입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통받은 국민들의 희생 속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범으로 거듭나 왔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의 성과를 내기에 급급하여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우회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장하는 입법은 중대한 역사적 실패가 될 것입니다.
- 진보넷은 그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채 진행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첫째,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비식별의 구체적인 정도와 기준설정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용과 그 유출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온 위험한 상황이고,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식별화의 수준으로는 언제든지 재식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둘째, 재식별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또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여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정보의 가공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셋째, 개인정보에 관한 그 어떠한 새로운 논의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허하는 범주 내에서,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자면, 금융위가 시도하는 금번 「신용정보법」의 개악은 그야말로 일탈일 수밖에 없습니다.
-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올바른 논의의 진행하기 위해서, 금융위는 산업계의 입장만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기관은 물론 정보인권 및 프라이버시 관련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러한 입장으로 진보넷은 이번 금융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끝>

진보네트워크센터